

제268회 강서구의의회 제2차 정례회
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19. 11. 2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년 11월 28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19 - 97
- 나. 제 출 자: 윤유선 의원 외 9명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11월 12일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20일

2. 제정이유

공정무역을 지원·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5조)
- 나.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, 판로 마케팅 사업, 홍보 및 국내·외 교류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각종 지원에 대해 규정(안 제6조~제8조)
- 다.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(안 제9조~제12조)
- 라.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(안 제13조)
- 마. 공정무역센터의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(안 제14조)
- 바.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,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에 대해 규정(안 제15조~제1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대외무역법」

나. 합 의: 일자리정책과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19. 11. 13. ~ 11. 18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, 환경파괴,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'공정무역사업'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,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내 공정무역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

나. 주요 내용

1)[안 제1~2조] 목적 및 용어 정의

2)[안 제3~4조]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

3)[안 제6~7조]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각종 지원 등

-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수립
-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 등
- 공정무역제품의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
-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, 홍보, 캠페인 사업 등

5)[안 제9~12조]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운영

- 전체 10명 이내로 구성 하며, 공동위원장 2명으로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며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규정
- 위원 임기, 해촉, 수당 및 운영등에 대한 내용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름

6)[안 제13조]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사업 추진 가능

7)[안 제14조] 공정무역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정무역 센터의 설치·운영 가능

8)[안 제15조]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가능

- 공정무역제품 이용자의 지속적인 불만제기 등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하려 어려운 경우 등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

9)[안 제16조] 공정무역제품 구매품화 증진 사업 추진

-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, 민간단체의 장, 관내기업 등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체결 가능
-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 가능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권장하고, 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우리구 공정무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7조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유통활성화 시키고 제15조 공정무역 제품 우선구매 등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에 기여하며,
- 제16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 지불 등을 통해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역량 배양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□ 지방자치법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□ 대외무역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)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□ 공정무역 관련 판매처 및 단체 현황

○ 강서구 공정무역 물품 판매처 현황(25곳)

연번	매장명	주소	취급품목 (품목수)
1	그나나다 보호작업센터	강서구 허준로5길 37 (가양동)	커피(1)
2	로데미카페 작은도서관	강서구 양천로24길 21	커피(1)
3	아름다운가게 강서화곡점	강서구 강서로 191, 1 층	커피,설탕,초콜릿(3)
4	자연드림 등촌점	강서구 강서로 56길 100	커피,향신료,너트,오일,초콜 릿, 과일, 주류,가공품(9)
5	자연드림 방화점	강서구 금강화로 63	커피,향신료,너트,오일,초콜 릿, 과일, 주류,가공품(9)
6	장수커피	강서구 등촌로 55길 18	커피(1)
7	행복중심생협 방화점	강서구 금강화로 23길	커피,향신료,너트,초콜릿,과일 (5)
8	행복한나눔 염창점	강서구 염창동 267-23	커피,설탕,초콜릿,수공예품,가 공품(5)
9	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 강서양천점	강서구 우장산로 5-7	커피, 향신료(2)
10	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 강서화곡점	강서구 강서로 45길 49	커피,설탕,향신료,오일,초콜 릿,과일,화장품,가공품(9)
11	강서구 내 스타벅스 매장 커피 (15곳)	까치산역, 가양이마트, 발산역, 염창역, 등촌, 화곡동, 양천향교역, 화곡DT, 가양역, 마곡GMG, 마곡나루역, 방화DT, 마곡사이언스타워R, 우장산역, 발산역사거리	

※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현황은 2017년 세이프넷협동201조합지원센터
작성 공정무역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○ 한국 공정무역단체의 운영현황

단체명	방법	시작 년도	조직형태	고용현황	판매처 (개)	주요품목
아름다운커피*	대면	2002	재단법인 (사회적기업)	44	269	커피, 초콜렛
두레에이피넷	대면	2004	주식회사 (협동조합자회사)	7	110	설탕, 커피
카페티모르	대면	2005	주식회사 (사회적기업)	12	96	커피
아이쿱생협**	대면	2007	생협	5	158	설탕, 바나나
페어트레이드코리아	대면	2007	주식회사 (사회적기업)	14	11	의류, 수공예
얼굴있는거래	대면	2007	개인회사	2	1	커피, 축구공
기아대책 행복한나눔	대면	2009	재단법인 (사회적기업)	3	30	커피
어스맨	서면	2011	주식회사	3	22	수공예, 건과일
더페어스토리	서면	2012	주식회사 (예비사회적기업)	8	6	수공예
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	대면	2012	주식회사 (사회적기업)	10	95	견과류, 건과일
이피쿱	서면	2013	노동자협동조합	5	22	커피

*아름다운커피는 2015년 아름다운가게에서 독립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무역 시작년도를 아름다운가게가 공정무역을 시작한 2002년으로 표기했다.

**아이쿱생협의 고용현황은 공정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 수를 의미한다.

자료: 쿠피협동조합(2015: 41-42).

※ 단체별 현황은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 됨

※ 이 논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'서울시 공정무역 지원사업'을 기반으로 작성